

제천시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95
----------	-----

제출년월일 1999.
제출자 제천시장

□ 제안이유

- IMF 관리체제하의 침체된 주택경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지방세를 지원
- 농공단지내 휴·폐업중인 업체를 인수하여 입주하는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으로 농공단지 입주 촉진을 통한 가동율 향상으로 지역경기 활성화

□ 주요골자

-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 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한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1,000분의 3으로 함
※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4항제8호에 의거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받은 날부터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의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0.3%하도록 예외 인정

○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

2001년 12월 31까지 농공단지내 휴·폐업중인 공장에 대체 입주하는자에 관해 취득한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조항 신설

근거법령

○ 충북도 재정 13400-63('99. 1. 11)호

○ 충북도 재정 13400-132('99.1.21)호

- 불임 : 1. 제천시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관련공문(준칙) 사본 1부.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4 및 제2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4(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을 적용한다.

제24조의5(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에 2001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주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에 한함)가 취득한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u>제24조의4(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u>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을 적용한다.</p>
<u><신 설></u>	<p><u>제24조의5(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u>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에 2001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주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에 한함)가 취득한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수신번호 26P
1월 11일 125

충청북도

우330-765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학동 69 / 전화(0431)223-2312 팩2312 / Fax 2313
제정과 과장 박영화 / 세정담당사무관 우일제 / 담당자 이강근

문서번호 재정 13400 - 6

시행일자 '99. 1. 11 (준영구)

(경 유)

한 월 더 01 - 12

주 조 세무(세정·재무·
재정경제)과장

선 결		6	지 시
접 수	일자 시각		
번호		69	결 재
처리과		61~62	· 종
담당자		김상근	감 찰

제 목 시(군)세감면조례증 개정조례(안) 시달서 18 조정가

1. 행정자치부 세제 13400-334('98. 12. 30)호와 관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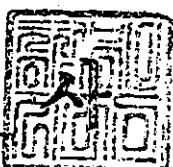
2. IMF 관리체제하의 침체된 주택경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시(군)세감면조례증 개정조례(안)을
따로는 일과 같이 시달하니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
장관의 협의를 얻은 것으로 보아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의회의 의견을
거쳐 시행하기 바랍니다.

문 일 1. ○○시(군)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1부

2. 행정자치부 공문 사본 1부. 글.

충청북도지

전결 자치행정국장 조구린



○○시(군)세감면조례개정

□ 개정이유

- IMF 관리체제하의 침체된 주택경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지방세를 지원하기 위함

□ 주요골자

-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한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1,000분의 3으로 함
※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4항제8호에 의거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받은 날부터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의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본리 과세(0.3%) 하도록 예의 인정

○○시(군)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시(군)세감면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4(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 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을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제24조의4(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갑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 대여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을 적용한다.</p>

전문접수번호

620

충청북도

우360-765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89 / 전화(043)220-2312 팩2312 / Fax 2319
 재정과 과장 박영화 / 세정담당사무관 우일체 / 담당자 이강근

문서번호 재정 13400 - 132

시행일자 '99. 1. 13 (준영구)

(경 유)

반 을 대 01 ~ 12

참 조 세무(세정·재무·
재정경제)과장

선	2/3	지	
점	일자	시	
수	시작	12/13	현금
	번호	211	
처리	파	인수	증명
담당자		담당자	2232

제 목 시(군)세감면조례증 개정조례(안) 시달

1. 행정자치부 제111 13400-22('99. 1. 13)호와 관련입니다.

2. 농공단지내 휴·폐업중인 업체를 인수하여 입주하는 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시(군)세감면조례증 개정조례(안)을 따로붙임과 같이 시달하니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보아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의회의 의견을 거쳐 시행하기 바랍니다.

별 입 1. ○○시(군)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1부

2. 행정자치부 공문 사본 1부. 끝.

충청북도지

전결 차지행정국장 조규린



○○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시(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5(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에 2001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주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에 한함) 가 취득한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제24조의5(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에 2001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주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에 한함)가 취득한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